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Q1 농촌공간계획은 무엇인가요? ..01

Q2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인가요? ..02

Q3 농촌공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04

Q4 농촌공간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05

Q5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 관련 지자체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06

Q6 농식품부와 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07

Q7 농촌특화지구는 무엇인가요? ..08

Q8 특히, 축산지구 등의 도입취지는 무엇인가요? ..10

Q9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11

Q10 농촌공간계획 관련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12

Q1

농촌공간계획은 무엇인가요?

☑ 농촌공간은 느슨한 토지이용 규제로 난개발이 방치되고,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제도에서 소외되어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농지, 산지를 제외한 농촌 토지의 대부분은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고, 공장 등 각종 시설 입지가 농촌마을 주거지 인근까지 허용되면서 정주 여건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지원합니다.

- 농촌공간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23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및 상향식 계획수립 체계,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 재정 지원입니다.
- 중장기 계획체계 및 농촌특화지구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농촌공간의 쾌적성, 편리성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Q2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인가요?

☞ 법률이 시행되면 계획수립권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농촌공간인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총 139개 시·군(도농복합시 57개 + 군 82개)이 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시·군은 기본계획을 '25년까지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시간적 범위: 기본계획('25~'34년 또는 '26~'35년)

공간적 범위: 농촌공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정의된 농촌)

● 계획수립지침을 10월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획수립 대상 시·군(139개) >

구 분	시·군
경기(1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강원(15)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1)	기장군
대구(1)	달성군
울산(1)	울주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 진하게 표시: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해수부 관할

☞ 기존에 농촌협약 선정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시·군(75개)도 계획수립지침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수립주기, 계획의 내용 등에서 법률상 계획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 계획 변경 등 수립 방식은 시·군 여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주기	10년	20년
계획의 내용	•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 일반현황 및 농촌공간구조 분석, 대내외 여건변화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정책수요 조사·분석
	• 기본계획의 방향, 목표 •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 비전·목표, 농촌공간 발전구상도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 농촌생활권 설정 및 정책과제 도출
	• 농촌특화지구운용 및 관리	
	•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 •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 농촌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 관리	• 생활권별 발전 계획 및 우선생활권 설정
		• 거버넌스 운영 및 집행·관리 계획

Q3

농촌공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시·군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관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내용(법 제7조제2항)

-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기본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 철거, 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농촌의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이전·재배치하고 주거·정주환경, 일자리·경제기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내용(법 제10조제2항)

- 계획의 개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 농촌특화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식
- 투자계획
- 기대효과



Q4

농촌공간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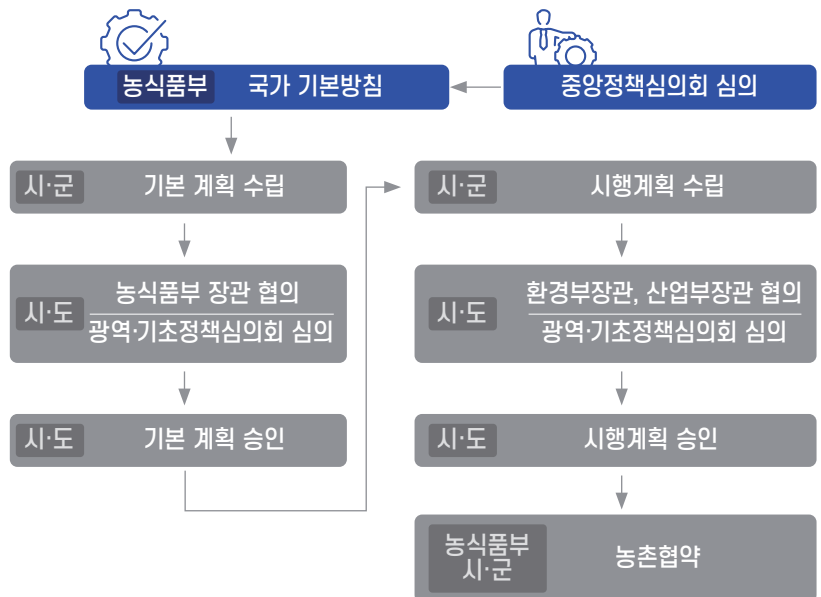
☑ **(기본계획)** 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①공청회 등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②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③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④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는 계획을 ⑤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계획)** 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①공청회 등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②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재생에너지지구지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하여야 하고
④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는 계획을 ⑤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도 >



Q5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 관련 지자체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지원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농촌공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광역·기초정책심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직이 광역·기초 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광역기초심의 사항: 기본·시행계획, 사업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 주요 시책 등

광역·기초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또한, 원활한 농촌공간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해 시·군 소속 행정조직을 개편·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조직에서는 현황 및 여건 조사·관리, 기본·시행·사업 계획의 총괄·조정·관리, 관계부처와 업무협약·교류, 사업예산 관리, 주민협정 운영지원 및 평가, 사업 점검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정부와 지자체 협력,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광역기초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사항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원기관은 현장에서 현황 조사, 기본·시행계획 수립, 주민협정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을 광역기초지원 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연구원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Q6

농식품부와 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됩니다.

- 농식품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촌공간 전반의 관리 방향을 정립합니다.

국가 기본방침의 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등 농촌 미래상
-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 철거, 집단화 또는 정비
-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주민의 정주 및 주거 여건 개선
- 교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작성

☑ 광역 차원의 농촌공간 관련 비전을 가지고 시·군 계획수립의 방향을 조정하고 심의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광역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 시·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고 광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공고하며,
- 시·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산자부(재생에너지지구 관련) 및 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 관련)과 협의하고 광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공고하는 등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Q7

농촌특화지구는 무엇인가요?

☑ 농촌특화지구는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개념입니다.

- 유사 기능의 시설끼리 배치하여 주민 거주지역 보호 및 산업 집적효과를 유도하며 법률에서 지정 목적에 따라 7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농촌특화지구의 운영방향 >

종류	주요 내용
농촌마을 보호지구	•(목적) 거주 환경 보호 및 생활서비스시설 입지 촉진 등 농촌마을 정주기능 강화 •(지정범위) 난개발이 문제 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보호가 필요한 마을 경계에서 일정 거리의 완충영역을 설정하여 농촌주민의 거주 여건 개선 •(성격) 거주 환경 보호를 위해 공장, 축사 등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①규제 측면과 생활서비스시설 지원 등 ②사업 시행 측면을 동시에 가짐 - ① (규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가칭 '보전취락지구' 신설 계획)에 의제하여 정주여건 침해하는 건축 행위 제한* 등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 ②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집중 지원으로 지구내 생활여건 개선
농촌산업 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성격) 계획입지·시설집적을 위한 사업 시행적 성격을 가지며 지구별 관련 시설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입지, 규모 등 자율적으로 설정 •(입지시설) ① 농촌산업: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 ② 축산: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 ③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서비스 시설 ④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시설
경관농업 지구 농업유산 지구	•(성격) 농산지 경관보전, 농업 유산보호가 필요한 입지, 규모 등을 지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성격 •(경관)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 육성 •(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

☑ 농촌특화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구와 같이 용도지역 위에 중첩하여 사·군이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합니다.

* 농촌공간 전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채워지지 않는(지구간 공백 발생 가능)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정 필요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범위 및 입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하위법령 및 계획수립지침을 통해 농촌특화지구별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활용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개념도 >



Q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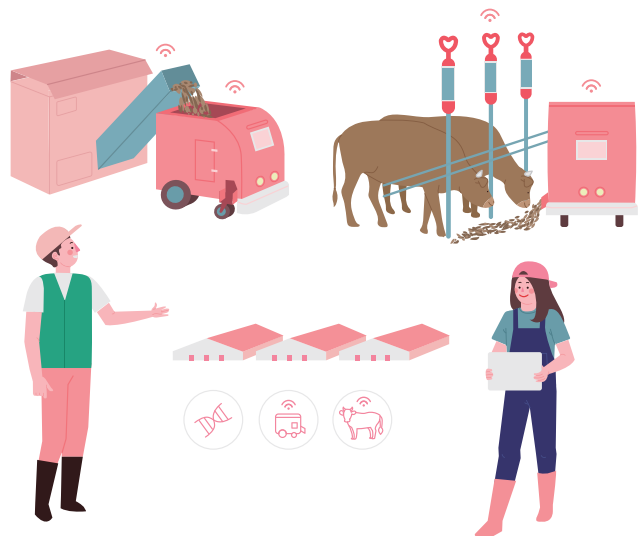
특히, 축산지구 등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 축산지구의 도입 취지는 난개발·저개발이 공존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계획지구 조성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함께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농촌공간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대상 시설로 결정해 정비하게 됩니다.

- 협의와 보상이 전제이므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더라도 축산농가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추진 과정에서 축산업계 등 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Q9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을 의미합니다.

-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수립되며 기본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도 시·군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시·군이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여건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적절한 규모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 내 복수의 재생활성화지역 설정도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상의 생활권 구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읍·면이 분리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시·군 전체 재생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경계를 결정합니다.



Q10

농촌공간계획 관련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 농촌공간계획 관련 예산지원은 시·군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군 간 통합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 농촌협약은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시범 추진해 왔으며, '23년 기준 총 75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개소당 평균 270억 규모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농촌공간 기능 재생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현재 4개 분야* 21개 농식품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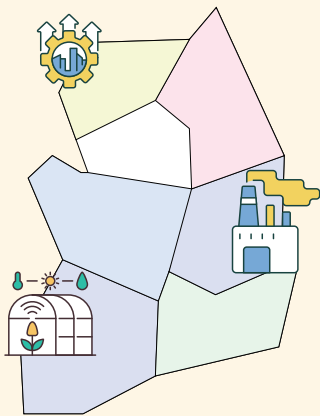
* 농촌공간정비, 정주·주거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확대

☑ 향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며 통합지원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 및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예시) 마을보호지구 지정 조건으로 농촌공간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원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연도	경기(4)	강원(5)	충북(9)	충남(9)	전북(10)	전남(11)	경북(14)	경남(12)	제주(1)
'20 (12개)	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임실 순창	보성	상주	김해 밀양	-
'21 (20개)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
'22 (21개)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
'23 (22개)	양평	정선	보은 옥천 단양	보령 당진	남원 고창 부안	영암 영광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	창원 진주 의령 함양	제주



< '23년 기준 농촌협약 대상 사업 >

구분	사업명
공간정비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농촌공간정비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악취측정ICT기계장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귀농귀촌유치지원)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농촌관광활성화지원(지역단위농촌관광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증가센터)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경영실습임대농장)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직매장지원)
사회서비스 확대	농촌형교통모델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마을배움나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축제)
	농촌보육여건개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농림축산식품부